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2021. 12.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1-122
----------	--------

2021. 12. 3.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1. 11. 16.
- 다. 회 부 일 : 2021. 11. 17.

##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3.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 가. 세 입
  - 해당 없음.
- 나. 세 출
  - 2022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2억2,440만8천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46억734만8천원 대비 8.31% 감액된 규모임.

(단위:천원)

구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4,224,408	4,607,348	△382,940	△8.31%
정책사업	1,807,716	2,238,345	△430,629	△19.24%
행정운영경비	2,416,692	2,369,003	47,689	2.01%

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4,224,408	4,607,348	△382,940	△8.31%
일반공공행정	1,807,716	2,238,345	△430,629	△19.24%
입법및선거관리	1,807,716	2,238,345	△430,629	△19.24%
선진의회상 정립	1,807,716	2,238,345	△430,629	△19.24%
의정활동 지원	1,708,940	2,175,939	△466,999	△21.46%
의정활동 홍보	98,776	62,406	36,370	58.28%
기타	2,416,692	2,369,003	47,689	2.01%
기타	2,416,692	2,369,003	47,689	2.01%
행정운영경비	2,416,692	2,369,003	47,689	2.01%
인력운영비	2,262,492	2,221,885	40,607	1.83%
기본경비	154,200	147,118	7,082	4.81%

- 구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의회 전체 예산의 42.79%, 18억77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9.24%, 4억3,062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4억1,66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01%, 4,76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음.

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	
			금액	증감률
총 계	4,224,408	4,607,348	△382,940	△8.31%
인건비	2,140,759	2,086,151	54,608	2.62%
인건비	2,140,759	2,086,151	54,608	2.62%
보수	1,790,860	1,988,657	△197,797	△9.95%
기타직보수	317,409	73,101	244,308	334.2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490	24,393	8,097	33.19%
물건비	1,778,714	1,704,448	74,266	4.36%
일반운영비	292,072	219,561	72,511	33.03%
사무관리비	252,620	177,378	75,242	42.42%
공공운영비	39,452	42,183	△2,731	△6.47%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여비	67,420	67,420	0	0.00%
국내여비	43,420	43,420	0	0.00%
국제화여비	24,000	24,000	0	0.00%
업무추진비	65,095	65,095	0	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81	3,881	0	0.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	2,320	0	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	50,494	0	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0	8,400	0	0.00%
직무수행경비	74,880	83,580	△8,700	△10.4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0	7,800	0	0.00%
<b>직급보조비</b>	<b>52,680</b>	<b>61,380</b>	<b>△8,700</b>	<b>△14.17%</b>
특정업무경비	14,400	14,400	0	0.00%
의회비	1,279,247	1,268,792	10,455	0.82%
의정활동비	237,600	237,600	0	0.00%
월정수당	565,713	560,667	5,046	0.90%
의원국내여비	11,210	11,210	0	0.00%
의원국외여비	61,425	61,425	0	0.00%
의정운영공통경비	109,188	109,188	0	0.0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	120,893	0	0.00%
<b>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b>	<b>7,400</b>	<b>4,700</b>	<b>2,700</b>	<b>57.45%</b>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8,800	27,000	1,800	6.67%
의원정책개발비	90,000	90,000	0	0.0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820	17,662	158	0.8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198	21,447	751	3.50%
경상이전	141,143	138,347	2,796	2.02%
포상금	101,543	98,747	2,796	2.83%
성과상여금	101,543	98,747	2,796	2.83%
연금부담금등	39,600	39,600	0	0.00%
의원상해부담금	39,600	39,600	0	0.00%
자본지출	163,792	678,402	△514,610	△75.86%
시설비및부대비	55,000	594,402	△539,402	△90.75%
<b>시설비</b>	<b>55,000</b>	<b>594,402</b>	<b>△539,402</b>	<b>△90.75%</b>
자산취득비	108,792	84,000	24,792	29.51%
<b>자산및물품취득비</b>	<b>104,792</b>	<b>80,000</b>	<b>24,792</b>	<b>30.99%</b>
도서구입비	4,000	4,000	0	0.00%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타직보수(정책지원관 신규임용) : 317,409천원(334.21%)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 7,400천원(57.45%)
  -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제9대 마포구의회 개원에 따른 집기품 구매)
    - ▶ 사무관리비 : 252,620천원(42.42%)
    - ▶ 자산및물품취득비 : 104,792천원(30.99%)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32,490천원(33.19%)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설비(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 완료) : 55,000천원(△90.75%)

## 4. 검토결과

### 가. 예산규모

-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포구 전체 예산액의 0.6%인 42억2,440만8천원으로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 18억771만6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4억1,669만2천원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46억734만8천원 대비 8.31%, 3억8,2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금부담금등,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액은 16억4,653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6,699만9천원, 22.1% 감액되었음.

이는 전년도 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의 사업완료로 인해 시설비의 증액 편성 사유가 소멸되어 감액된 것으로, 기타 사업별 편성목은 제9대 마포구의회 개원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479만2천원, 사무관리비 7천655만7천원 및 시설공사비 5,500만원의 신규 증액 편성하였음. 기타 사업 편성목은 예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음.

-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회비는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 대비 1,045만5천원(0.82%) 증액된 12억1,782만2천원이 편성되었음.
  - 월정수당 5억6,571만3천원(증액 504만6천원)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반영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740만원(증액 270만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880만원(증액 180만원)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82만원(증액 15만8천원)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19만8천원(증액 75만1천원)
- “국외 선진의회 연수” 사업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의회비(의원국의여비)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6,240만5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구성되었음.
-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의정활동시 필요한 기획보도비용과 마포구의회 지역신문 광고금액 9,87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637만원, 58.28%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제9대 마포구의회 구성에 따른 의정홍보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사무관리비의 증액편성에서 기인된 것임.

-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주요 현안 과제를 홍보 하고 광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광고료 및 신문 구독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음. 지방 자치 30년을 맞이하는 등 지방분권 시대의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구 의회의 다각적인 의정홍보·광고 등을 추진하여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 한 매체 선정과 방법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 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됨.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액은 22억6,249만2천원이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과 정책지원관 임용(7급 2명, 8급 2명)에 따라 1.83%, 4,060만7천원 증액되었음.
-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1억5,420만원이며 전년대비 708만2천원, 4.81% 증 액되었음.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에 사무관 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증액 편성에서 기인된 것임.

## 5. 검토의견

-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42억 2,440만 8천원으로 2021년도 예 산액 46억 734만 8천원 대비 3억8,294만원 감액 편성됨.
- 이는 21년도 방송설비 교체공사가 완료 되어 시설비의 소요가 없어진 사 유로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된 것임. 그 밖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예 따라 인건비 와 사무관리비 등은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통계사업은 기존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4개 통계목은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합산하여 총액한도<sup>1)</sup>를 설정한 한도액 3억 4,082만원 내에서 편성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일부 사업 편성목에서 예산 산출 기준에만 부합되도록 산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이로 인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편성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표.1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안만 기재한 경우〉

과목구분	2022년 예산(안)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09,188,000원
시설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설공사 55,000,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실 구성 12,575,000원
사무관리비	홍보동영상 제작 22,000,000원

-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사항인 정책지원관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국 조직·정원 등에 있어 전면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의회 공간 재배치 추진과정에서 구의원 등 청사 주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청사이전 후 처음으로 방송설비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방송시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구의회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이루고자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시스템, 인터넷 생방송 등의 기능 수요별 시스템 체계의 개선 및 추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음.

- 국외 선진의회 연수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은 아직 코로나-19 종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예년과 같은 예산 편성은 사업별 유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포스트 코로나 및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